

## 부록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개정 전·후 비교 및 주요 내용

[부록 표 1]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 주요 내용

| 주요 개정 내용    | 관련 조항 (개정기준)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 | 개정 내용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법의 보호대상 확대  |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(제1조, 제2조제1호) | 법의 보호대상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<br>산업재해는 “근로자”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   | 보호대상을 “근로자” → “노무를 제공하는 자”로 확대<br>산업재해는 “근로자” → “노무를 제공하는 자”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·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(제77조, 신설)     | 캐디, 보험설계사 등 종전의 특고와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에 미포함<br>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거의 받지 못함                 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의무 부여, 그 교육내용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 |
|             |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(제78조, 신설)   |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임에도 근로자나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, 배달 앱 등을 통한 노무제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|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의 수거·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주가 중개를 통해 물건의 수거·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·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 마련   |
|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| 법의 적용범위(제3조)                     | “사업”이라는 용어가 “사업”과 “사업 또는 사업장”의 약칭으로 혼용되어 사용<br>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                 | 사업장을 포함하는 “사업”으로 단위 통일<br>“사업의 규모”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및 건설공사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명시<br>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 삭제 |

자료: 고용노동부, 2019a

[부록 표 1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(표 계속)

|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| 관련 조항 (개정기준)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 | 개정 내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|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(제58조)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*를 받으면 도급이 가능하여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<br>*인가대상: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해·위험성이 높은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물질 제조·사용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을 금지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도급의 승인(제59조)                    | 도급 시 지켜야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열거하고,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한 후에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이 안전·보건조치의 기술적 사항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움 |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,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적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고용부장관은 도급인이 승인기준(안전 및 보건조치)의 완료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이후의 지속적인 이행체계까지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함 |
|                      |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(제60조, 신설)       | 도급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도급인의 사고발생의 높으나 현재 규정이 없음   |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(제61조)               | 산업 전반에 비용절감, 위험 외주화 목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짐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는 문제 발생   |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 |
|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    |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(제14조, 신설)     |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하도록 하여 현장소장 등이 행위자로 처벌받고, 대표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움  |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,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승인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(제63조) | 도급인의 범위를 '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', '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 도급'으로 한정, '도급인의 안전·보건 조치 책임'은 추락,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 발생장소로 한정              | 도급인이 도급의 유형, 위험장소,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  |

자료: 고용노동부, 2019a

[부록 표 1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(표 계속)

|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| 관련 조항 (개정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| 개정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작업중지 강화           | 근로자의 작업중지(제52조)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시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불명확하고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음 | 별도 조문으로 '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'를 명시   |
|                   | 사업주의 작업중지(제51조)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중지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 하나인 작업중지 목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하나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명확히 함<br>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조문에서 규정 |
|                   |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(제55조)         |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만 규정하고 있고,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 |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  |
| 건설업 산업재해의 예방책임 강화 |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(제67조, 신설)       |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예방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|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·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·보건상의 조치의무를 규정  |
|                   | 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(제76조, 신설) |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작업 중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임대업체, 설치·해체 업체는 영세 소규모사업주가 대부분으로 작업시 안전관리에 취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·기구의 사용 또는 설치·해체작업에 대한 직접계약 관계없이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|
|                   |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등록(제82조, 신설)            | 타워크레인의 설치·해체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로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가 설치·해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,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  |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,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고용노동부, 2019a

[부록 표 1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(표 계속)

|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| 관련 조항 (개정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| 개정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(110조)             | MSDS 작성자를 '양도·제공자'로 규정함에 따라 제조·수입하여 직업취급하고 양도·제공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 의무 제외<br>대상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므로 정부가 유통현황 파악이 어렵고, 근로자가 질병의 업무연관성 등을 알기 위해 MSDS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공받지 못함 | MSDS 작성자를 화학물질의 '장도하거나 제공하는자'에서 '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'로 변경<br>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받은 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 제출 |
|                   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(111조)                  | 화학물질 양도·제공자가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·제공하도록 규정   | MSDS 양도·제공자가 양도받거나 제공 받는자 에게 MSDS를 제공하도록 규정, MSDS의 변경주체를 제조·조립한 자로 명확히 하고 제조·수입자가 다시 제공하도록 규정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(112조)         | 화학제품 양도·제공자가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 | MSDS상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|
|                   |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(113조, 신설) | 개정법률 112조에 따라 MSDS에 구성성부, 함유량 등의 정보를 제출할 때 국외 제조사가 제품복제를 우려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|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, 구성성분 성조, MSDS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                    |
| 그 외 유해·위험 방지조치 등  | 위험성 평가의 실시(제36조)                    | 사업주가 유해·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·실행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|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위치 이동  |
|                   | 역학조사(제141조)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은 위임 없이 규정  |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, 참석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종류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신설   |

자료: 고용노동부, 2019a

[부록 표 1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(표 계속)

|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| 관련 조항 (개정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| 개정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|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(제167조)          | 사업주가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지 않음 | 사업주가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(제169조) |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 형벌부과,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이 중요   |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부과되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현의 2분의 1까지 가중  |
|                   | 양벌규정(제173조)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인데,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, 법인을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음  |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을 이원화하여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|
|                   | 형벌과 수감명령의 병과(제174조, 신설)            |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은 제재적 의미보다 예방적 목적 제제조치를 받더라도 방지수단으로는 역할이 어려움   |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 선고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감명령 병과할 수 있음             |

자료: 고용노동부, 2019a